

2016년 1차 경찰학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

경단기 경찰학개론 황영구 교수

황영구 박사의 경찰단기학교
: <http://cafe.daum.net/police2004>

1. 분석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으로 **2015년 3차시험에 비해 10~15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3번 범죄정보**의 특징은 **특채 수사시험에서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19번 체류자격**은 **수업시간에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내용**이므로 이 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론 11문제, 각론 9문제**로서 총론 비중이 조금 높았으며, **법령 16문제, 이론 4문제**가 출제가 되어 **법령문제가 전체 80%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법령특강에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데 **법령특강 1단계 13문제 출제, 2단계 2문제 출제, 3단계 1문제 출제**되었는데, **19번 체류자격 문제를 제외하면** 법령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론문제는 **경찰분류, 부패이론, 간첩망, 범죄정보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범죄정보 문제를 제외하면** 아주 쉽게 해결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8번 ①지문도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총평

전체적으로 볼 때 4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 있어 **경단기 기본 → 심화이론(법령+이론+ox) → 60일 작전**을 충실하게 따라온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80~85점 정도**는 무난히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린 땀은 진실합니다. 흘린 땀방울만큼 이번시험에서 결과로 말해 줄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해설은 경찰학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번은 제외)

1. 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정답 : ①

■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중앙정부, 집권형 → 능률성(↑), 민주성(↓), 전국적 조직, 대륙법계의 국가
자치경찰	지방정부, 분권형 → 능률성(↓), 민주성(↑), 지역적 조직, 영미법계의 국가

2.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경찰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부정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 ① 전체사회 가설
- ② 구조원인 가설
- ③ 썩은 사과 가설
-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정답 : ③

■ 경찰부패의 원인

전체사회 가설	① 미국 시카고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월슨이 내린 결론이다. 즉 미국의 월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구조원인 가설	①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하였으며, 이는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②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썩은사과 가설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3. 「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③ 치안행정협의회는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③

■ 치안행정협의회(경찰자문기관)

의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근 거	경찰법
성 격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가 아닌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등 주민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5개

4. ④

■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

5.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5. ③

■ 징계권자

대 상	징계종류	징계권자
중징계권자	㉠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경찰청장(제청) → 행정자치부장관 과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집행)
	총경 및 경정의 강등·정직	경찰청장
	경감이하의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권자	경무관 이상의 견책, 감봉	경찰청장

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6. ①

■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집단행동 금지의무	경찰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집단적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7. ②

■ 경찰장비 사용 등

경찰장비 사용 등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8. ②

■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 ①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 경찰청장은 ㉡급 및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①

■ 문서비밀분류의 원칙(보안업무규정 제12조)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 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독립분류의 원칙	①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안 된다.

	즉, 문서와 분류되는 문서의 등급을 관련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 대해 확립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한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
외국 또는 국제 기구 비밀존중의 원칙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①

■ 이의신청

이의 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③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②

■ 경비업 업무

시설 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 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 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특수 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 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폭행 ㉢ 중상해 ㉣ 영아유기 ㉤ 특수공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④

■ 가정폭력범죄 유형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신체 수색, 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의 죄를 말한다.

☞ 약취·유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주거침입, 퇴거불응, 아동구결 등(×)

13. 범죄정보는 수사정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정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과지향성 - 범죄정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혼합성 - 범죄정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가치변화성 - 범죄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 ④ 결합성 - 범죄정보는 여러 정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13. ③

■ 범죄정보의 특징

시한성	범죄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결합성	범죄정보는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기초정보 → 사건정보 → 범죄정보)
혼합성	범죄정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가치변화성	범죄정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결과지향성	범죄정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14.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4. ④

■ 국가중요시설 경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

15.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④

■ 주차금지의 장소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07.1 승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흡수관)을 넣는 구멍
 -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포함한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③

■ 1종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관자로 본다.
- ③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④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17. ②

■ 주최자

주최자	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②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	---

18. 대상국의 기밀 탐지, 전복, 태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하조직형태를 간첩망이라 한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간첩망의 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
-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

- ①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서클형
- ② ㉠ 삼각형 ㉡ 피라미드형 ㉣ 레포형
- ③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서클형
- ④ ㉠ 피라미드형 ㉡ 삼각형 ㉣ 레포형

18. ①

삼각형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서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여 공작원간 횡적 연락 차단시키는 활동조직을 말하며, 북한 간첩이 주로 사용하는 조직형태이다.
서클형	첩보전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로서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를 말한다.
단일형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간첩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동조자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의 형태를 말한다.
피라미드형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레포형	현재 사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중첩으로 연결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9.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① ㉠ D-1 ㉡ A-2 ② ㉠ D-1 ㉡ E-2
- ③ ㉠ E-6 ㉡ A-2 ④ ㉠ E-6 ㉡ E-2

19. ④

체류자격은 총 31개이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사항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 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③

■ 언론중재위원회

구 성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